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19나329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J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23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7가단126252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

가. 소외 C(K생)과 소외 D[E생] 사이에 2012. 9. 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위 C과 피고 사이에 2012. 9. 1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위 C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. 9. 5. 접수 제34879호로 마친

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. 9. 18. 접수 제366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’라고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피고에 대하여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,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. 2019. 4. 17.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의 L 법무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았는데, 위 법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더니 경매진행 중이고,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니 빨리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같은 날 사건기록을 열람한 결과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. 5. 1. 추완항소를 하였다.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,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.

나. 판단

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, “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포천시 M에 대한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, 주소의 변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루어진 재송달이 다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소장부분을 공시송달한 사실,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8. 2. 22. 제1심판결을 선고한 다음, 피고에게 그 판결정본을 2018. 2. 22.자로 공시송달하였고, 이에 따른 항소기간 도과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, 피고는 2019. 4. 17. 제1심 법원에 열람 및

복사신청을 하였고,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. 5. 1.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.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,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제1심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8. 4. 18. 말소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, ② 피고와 법률상담을 하였던 L 법무사는 2019. 4. 8.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·발급받았고, 같은 날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사이트를 통해 제1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, ③ L 법무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9. 4. 8. 무렵 피고에게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을 알리면서 여직원과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소장 및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열람, 등사하도록 말하였고, 피고와 몇 번 연락을 취하던 여직원이 2019. 4. 17. 소장 및 제1심 판결문을 열람, 등사해 왔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피고는 당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, 2019. 4. 17. 제1심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9. 4. 8. 무렵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때임이 명백한 2019. 5. 1.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,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한성진, 판사 조우연, 판사 이준철

별지

목 록

1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 임야 6,612㎡ 중
공유자 C 지분 6612분의 1653(갑구 40번)
2. 경기 연천군 N 임야 3,306㎡ 중
공유자 C 지분 2분의 1(갑구 2번)
3. 태백시 O 임야 166,612㎡ 중
공유자 C 지분 58860분의 1353(갑구 16번)
4. 태백시 P 임야 73,884㎡ 중
공유자 C 지분 73884분의 2314(갑구 2번). 끝.

